

[일련번호 : 12]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서류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증명서의 교부 등)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하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8호(2022. 01. 01.)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에는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의하면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 「조문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실무편람」 p.14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자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반드시 청구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2022년 ~ 2024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총 93건에 대하여 ① 대리인이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였을 때,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첨부를 누락하였고 ②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③ 신청인 서명을 누락한 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함에도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세부내역 별도 송부)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